



노스캐롤라이나주
평가위원회

의제: 고위당국결정번호

수신:

원고

고용주

N.C.Gen.Stat. §96-15(e) 에 의거하여, 이 사유는 항소 결정 번호 에 따른 (원고의) (고용주의)항소를 검토하기 위해 평가 위원회 ("Board")에 제출되었습니다. 기록 증거 및 적시에 제출된 모든 요약문 또는 서면 주장이 완전하게 검토되었습니다.

고용안전법은 본부가 당사자들의 실질적 권리를 보호하는 방식으로 청문회를 실시할 것을 요구합니다. N.C. Gen. Stat. §§ 96-15(c) 및(f); 04 N.C. Admin. Code 24C .0209. 를 참조하십시오. 즉, 모든 당사자는 절차상 공정성 및 실질적인 정당한 절차를 받아야만 합니다. 최소한의 절차적 공정성은 당사자들에게 발언이 들어질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당사자들이 발언이 들어질 권리를 누리기 위해서, 그들은 통지를 받아야 합니다. 실질적인 법 절차는 모든 당사자들에게 공정하고 평등한 법률 적용을 요구합니다.

[해당되는 경우에만] - - - - 항소 & 청문회: 레벨 1 - 초기 결정에 대한 항소 팜플렛은 (원고) (고용주)에게 판결서류 번호의 사본과 함께 우편으로 발송되었습니다. 팜플렛의 5 번 및 6 번째 페이지에서 (원고) (고용주)는 결정이 (원고) (고용주)에게 유리하게 나왔음에도 (그) (그녀) (그것)은 항소 심판 앞에서 청문회에 참석해야 한다는 통지를 받았습니. 팜플렛에는 또한 다음과 같은 정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청문회를 준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청문회 통지를 주의 깊게 읽으십시오. 청문회 통지서와 함께 제공된 모든 문서를 읽고 케이스에 대해 어떠한 말들이 적혀 있는지 알고 계십시오. 이것은 귀하가 어떤 증인이 청문회에서 증언을 해야 할지 결정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귀하의 사건을 뒷받침하는 모든 서류, 기록, 및 기타 증거를 수집하십시오. 청문회가 전화로 개최되는 경우, 귀하는 청문 일 날짜 전에 항소 심판 및 각 당사자에게 귀하의 증거 사본들을 제공해야 합니다. 직접 참석하는 청문회의 경우, 각 당사자 및 항소 심판들에게 충분한 사본을 준비하십시오. 귀하가 다른 당사자 및 항소 심판에게 사본을 제공하지 않는다면, 항소 심판은 케이스에 대한 결정을 내릴 때에 귀하의 증거를 고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목격자를 선택하고 그들이 청문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준비하십시오. 목격 증인과 직접 증언은 항상 최선의 증거입니다. 직접 증언은 그들 스스로가 언급된 것 또는 행해진 것에 대해 낱새를 맡고, 느끼고,



보았거나, 들은 증인들을 포함합니다. 만일

고위당국 결정번호

4 페이지 중 2

혐의된 행위에 대한 녹취록이 있는 경우, 그 녹취록은 증거로 제공되지 않은 녹취록에 대해 보았거나 들었다고 하는 증인의 증언보다 최선의 증거가 됩니다. 어떤 당사자가 해당 케이스와 관련 있다고 귀하가 생각하는 문서에서 명했거나 서면으로 무언가를 제출했다는 혐의가 있는 경우, 귀하는 해당 증거를 제출할 수 있지만, 귀하가 항소심판 및 다른 당사자에게 해당 문서의 사본을 제공해야 합니다. 전자화 청문회 의 경우 항소심판에 게 연락하거나 귀하의 청문회 통지와 함께 제공된 전자화 청문회 질문지를 작성하여 귀하의 증인들의 이름 및 전화번호를 제공하십시오. .04 N.C. Admin. Code 24C .0209 를 참조하십시오.

다른 정보와 함께, 팜플렛은 청문회에서 예상할 수 있는 것, 청문회를 재조정하는 방법, 한 측 혹은 양 측 당사자가 청문회에 참석하지 않는 경우 무슨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 당사자들에게 알렸습니다.]

(원고) (고용주)는, (그의) (그녀의) (그것의) 항소에서, 어떠한 증언 및/또는 맹세하에 제공된 문서에 포함되지 않으며 이 케이스에서 항소심판 앞에 개최된 증거 청문회에서 적절하고 조사 받을 만한 대상인 정보를 제공합니다. 일에 청문회 공지 별지 번호가 모든 당사자들에게 우편 발송되었습니다. 다른 것들과 함께, 통지는 다음과 같이 명시하였습니다:

증거를 제출하는 방법: 맹세한 증언이 요구됩니다. 귀하가 증인들이 증언하길 원한다면, 그들은 청문회에서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귀하가 청문회 담당자가 고려하기를 원하는 문서, 전자 녹취록, 또는 기타 증거가 있는 경우, 귀하는 이를 담당자 및 각 당사자에게 우편 발송 또는 전달해야 합니다. 증거는 청문회 이전에 수령되어야 합니다.

앞서 언급된 서면 통지에 따르면 (원고) (고용주)는 모든 증언 및 기타 증거 제시를 위해 증거 청문회에 참석할 의무에 대해 알려졌음이 분명합니다. 이 기록에는 04 N.C. Admin. Code 24C .0201 에 정의되었듯 (원고) (고용주)가 청문회에 참석하지 못하게끔 되었음을 나타내는 것이 없습니다. 또한, 기록에는 04 N.C. Admin. Code 24C .0207 에 의거하여 (원고) (고용주)가 증언 또는 문서 증거를 제출하거나 청문회의 재조정을 요청하지 못하게끔 되었음을 나타내는 것 역시 없습니다. 따라서, 위원회는 (원고) (고용주)는 절차적 정당한 절차를 부여받았다고 결론 내립니다. 위원회는 단순히 (원고) (고용주)가 증언이나 기타 증거를 제시할 수 있는 (그의) (그녀의) (그것의) 권리를 지키지 않았거나 04 N.C. Admin. Code 24A .0105(26)에 정의된 청문회를 재조정하기 위한 정당한 사유를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재개하지는 않기로 결정합니다. 정당한 사유는 실사를 실시할 때에 법으로 요구되는 행위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한 합법적 변명이 되는 법적으로 충분한 이유가 되어야 합니다. Douglas v. J.C. Penney Co, 67 N.C. App. 344, 313 S.E.2d 176 (1984) 또한 참조하십시오. Patrick v. Cone Mills Corp., 64 N.C. App. 722, 308 S.E.2d 476 (1983).

실업 보험 혜택을 위한 분쟁 클레임을 포함한 케이스에 대한 궁극적 사실 발견자로서 위원회는 항소심판이 발견한 사실이 적절한 증거에 근거하여 스스로의 것으로 적용한다고 결론 내립니다. 위원회는 또한 항소심판이 발견된 사실에 고용 안전법 (N.C. Gen. Stat. § 96-1 이하 참조)을 적절하고 올바르게 적용했으며 결과적 결정은 법과 사실에 부합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항소심판의 결정은 (확인되었습니다) (뒤바뀌었습니다) (수정되었습니다)



원고는 부터 실업 보험 혜택에 대하여 **실격입니다**
실격이 아니며부터 실업 보험 혜택을 받게 됩니다.

평가 위원회 위원 Fred F. Steen, II 및 Stan Campbell 이 항소에 참가하여
이 결정에 동의합니다.

이.

평가 위원회

위원장

주의:이 고위 당국 결정은 법원의 재심을 위한 청원이 아래에 설명된 것처럼 고등 법원에 제출되지 않는 한,우편 발송 후 삼십 (30)일 이후에 최종 결정될 것입니다.우편 발송 날짜는 이 결정서의 마지막 페이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위원회가 법률 자문을 제공하지는 않지만,고위 당국 결정에 항소하는 방법에 대한 추가 안내는 동봉된 팜플렛을 참조하십시오. 해당 팜플렛은 주 전역의 공공 고용 사무소 및 고용 안전부 웹사이트에서 볼 수 있습니다.또한 귀하는 www.des.nc.gov 를 통해 고용 안전부 웹사이트 자주 묻는 질문 섹션을 방문하여 귀하가 선택한 변호사와 상의할 수 있습니다.

사법 심사를 위한 항소 권리

이 고위 당국 결정에 대한 항소는 청원자로부터 그 또는 그녀가 거주하는, 또는 청원자의 주된 사업 장소가 있는 카운티 고등 법원 사무관에게 제출되어야 합니다. 당사자가 노스캐롤라이나 주 어느 카운티에도 거주하거나 주된 사업장을 두고 있지 않다면,항소는 노스캐롤라이나 주 웨이크카운티의또는 논쟁이 일어난 노스캐롤라이나카운티의 고등 법원 사무관에게 제출되어야 합니다.

이 고위 당국 결정은 N.C. Gen. Stat. §§ 96-15(h) 및 (i)에 의거하여,법원의 검토를 위한 청원서가 적시에 고등 법원에 제출되지 않는 한,삼십 (30)일 이후에 최종 결정될 것입니다.

고등 법원 사무관에게 제출된 사법 심사 청원서 사본은 청원 접수 후 십 (10)일 이내에 고용 안전부("Division") 및 소송에 기록된 모든 당사자에게 제공되어야 합니다. 청원서 사본은 개인적 서비스 또는 공인 우편으로 송달 받아야 하며, 수령 확인이 요청됩니다.고등 법원 검토를 위한 청원은 반드시 해당 부서의 업무 처리를 위해 등록된 요원에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A. John Hoomani
Chief Counsel
North Carolina Department of Commerce
Division of Employment Security
우편 주소: Post Office Box 25903, Raleigh, NC 27611-5903
실제 주소: 700 Wade Avenue, Raleigh, NC 27605-1154



중요 - 다음 장을 보십시오

고위당국결정번호
4 페이지중 4

주의: 귀하가 다른 당사자의 사법 심사 청원서를 받은 경우, 귀하는 다음과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법 심사 절차 당사자가 되지 않습니다: (1) 귀하가 심사 당사자가 되기를 원하는 청원서를 받은 후 십 (10)일 이내에 고등 법원에 통보하는 경우, 또는 (2) N.C. Gen. Stat. § 1A-1, Rule 24 에서 제공된 것과 같이 개입하기 위한 동의서를 제출하는 경우.

모든 이해 당사자에게 통지

04 N.C. Admin. Code 24A .0105(32) (고용주의 실업 보험 관리자로 일하는 제 3 자의 개인 포함)에 정의된 법정 대리인은 면허가 있는 변호사이거나 N.C. Gen. Stat. Ch. 84 및 § 96-17(b). 에 따라 면허가 있는 변호사가 감독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변호사 감독의 통지 및 / 또는 증명은 04 N.C. Admin. Code 24C .0504 에 따라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법 절차의 법적 대리는 N.C. Gen. Stat. Ch. 84 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04 N.C. Admin. Code 24C .0504 에 의거하여, 당사자에게 법정 대리인이 있는 경우, 당사자에게 제공되어야 하는 모든 서류 또는 정보는 법정 대리인에게만 발송됩니다. 당사자의 법정 대리인에게 제공 되는 모든 정보는 당사자에게 직접 발송된 것과 동일한 효력과 영향을 가집니다.

2013 년 6 월 30 일 이후에 제기 된 클레임의 경우, 원고는 이후 항소에서 취소된 행정 또는 사법 결정에서 수령된 급여의 상환 대상이 됩니다. N.C. Gen. Stat. § 96-18(g)(2).

원고에 대한 특별 통지: 귀하가 근본 클레임에 관련하여 실업 보험 급여를 수령하고 있거나 이전에 받았고, 이 고위 당국 결정이 그러한 혜택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귀하를 부적격 또는 실격으로 규정하는 경우, 귀하는 N.C. Gen. Stat. § 96-18(g)(2)에 의거하여 혜택을 초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고위 당국 결정에 의해 초과 지급이 이루어진 경우, 귀하는 해당 부서의 혜택 무결성/ 혜택 지불 통제 섹션으로부터 초과 지급 통지 또는 초과 지급 결정 통지서를 별도의 우편으로 받게 됩니다. 초과 지불 통지 또는 초과 지급 결정 통지서는 다른 것들과 더불어, 귀하의 초과 지급 액수와 적용되는 처벌을 명시 합니다. 귀하가 초과 지급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위에 제시된 것과 같이, 그리고 노스캐롤라이나 법에 따라, 이 고위 당국 결정의 사법 검토 청원을 제기하는 것뿐임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청원서에서, 귀하는 항소가 (1) 실격 또는 자격의 문제 및 / 또는 (2) 귀하가 초과 지급을 받았음에 대한 최종 결정에 대한 것인지 여부를 명시해야 합니다.

항소 제기:

결정 전달: